「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Ⅰ. 심사경과

1. **제출일자**: 2026년 10월 6일
2. **제 출 자**: 구미시장
3. **회부일자**: 2026년 10월 7일
4. **상정일자**: 2026년 10월 15일
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Ⅱ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: 행정안전국장 박 은 희

2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및 위촉 대상 추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의2)

・ (당초) 2026년 12월 31일 → (변경) 2031년 12월 31일

나. 위원 수 확대 등 위원회 관련 정비(안 제4조, 제6조)

다. 기금관리공무원 현행화(안 제4조, 제10조)

라. 용어 및 문구 등 정비(안 제3조, 제10조, 제11조, 제14조, 제18조, 제2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　　타

・2026년 제2회 구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완료('26.4.27.)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및 위촉 대상 추가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, 기금관리공무원 현행화 및 용어·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,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, 기금운용 및 교육·장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직무대행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함.

- 다만, 전문분야 위원을 추가하도록 규정한 만큼 위원 위촉 시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여 기금의 운용 및 장학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　　략

Ⅴ. 토　론　요　지: 없　　음

Ⅵ. 소수의견의 요지: 없　　음

Ⅶ. 심　사　결　과: 원안가결